

【주영더팰리스 지분】 입주자모집공고



※ 본 공동주택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건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건본주택 방문 사전 예약제는 일일 방문객수와 시간별 방문객수를 한정하여 운영하므로 건본주택 분양 사무실(☎055-649-7575)로 사전 연락 후, 예약된 일자와 시간에 건본주택을 관람하도록 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의 경우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을 해당 신청일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건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 인원이 제한됩니다.)
 - ※ 당첨자의 건본주택 방문 일정은 당첨자 발표 이후 개별 통보 및 사전 예약제 실시 예정
 - 당첨자발표 이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체결에 한해 건본주택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서류 접수 일에 건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본인 1인만 입장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에 한해 최대 1인까지 동반하실 수 있습니다.(동반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체결일에 건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본인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동반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건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건본주택 입장 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여권 확인 예정. 출입국사실증명서에 최근 1개월 내에 출입국 사실이 있는 분은 여권을 지참하여 체류지 확인 필요)
 - 기타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건본주택 관람, 당첨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주영더팰리스지분' 건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055-649-7575)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 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06.03.입니다.(청약자격조건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통영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급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상남도 통영시)은 「주택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3.)현재 통영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통영시 거주자가 우선입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단 청약민 및 도시재생 부채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6개월 이상, 예치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0	0	0	0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 후 재공급	0	0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3.)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이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 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 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1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blog.naver.com/jeo2505>)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공급세대수의 1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1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 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조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없음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필요한 분양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일 기준은 향후 관련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 2020.0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검수기간	계약체결
일정	6월 15일(수)	6월 16일(목)	6월 17일(금)	6월 23일(목)	6월 24일(금) ~ 6월30일(목)	7월 4일(월) ~ 7월 6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영더팰리스지븐' 견본주택 방문 (10:00~16:00) (사전 방문예약제)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장소	▪ "주영더팰리스지븐"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 일정 및 운영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 예약 방식 및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임
---	---	---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물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통영시 건축과-29724호(2022.06.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263-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3개동 총 32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지하 1층, 지상 최고 39층
 [특별공급 170세대(일반[기관추천] 32세대, 다자녀가구 32세대, 신혼부부 64세대, 노부모부양 10세대, 생애최초 3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 00344	01	59.6859A	59A	59.6859	27.7215	87.4074	30.6064	118.0138	20.9882	34	4	4	7	1	4	20	14	1
		02	59.6859B	59B	59.6859	27.6885	87.3744	30.6064	117.9808	20.9882	34	3	3	7	1	3	17	17	1
		03	59.6268C	59C	59.6268	28.4217	88.0485	30.5761	118.6246	20.9675	62	6	6	12	2	6	32	30	2
		04	73.1577A	73A	73.1577	32.1988	105.3565	37.5146	142.8711	25.7255	136	14	14	27	4	14	73	63	4
		05	73.4064B	73B	73.4064	32.7945	106.2009	37.6422	143.8431	25.8130	34	3	3	7	1	3	17	17	2
		06	84.9907	84	84.9907	38.3623	123.3530	43.5824	166.9354	29.8867	22	2	2	4	1	2	11	11	1
	합 계											322	32	32	64	10	32	170	152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 약식표기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59.6859A	59.6859B	59.6268C	73.1577A	73.4064B	84.9907
-----------------	----------	----------	----------	----------	----------	---------

		8층	2	58,563	319,493	378,056	10,000	28,000	28,354	28,354	28,354	28,354	28,354	28,354	28,354	28,354	113,224	
		9~25층	24	58,563	330,493	389,056	10,000	28,000	29,179	29,179	29,179	29,179	29,179	29,179	29,179	29,179	29,179	117,624
		26~최상	4	58,563	338,493	397,056	10,000	28,000	29,779	29,779	29,779	29,779	29,779	29,779	29,779	29,779	29,779	120,824
84	701 (1)	6층	1	67,805	363,083	430,888	10,000	35,000	32,317	32,317	32,317	32,317	32,317	32,317	32,317	32,317	32,317	127,352
		7층	1	67,805	368,083	435,888	10,000	35,000	32,692	32,692	32,692	32,692	32,692	32,692	32,692	32,692	32,692	129,352
		8층	1	67,805	373,083	440,888	10,000	35,000	33,067	33,067	33,067	33,067	33,067	33,067	33,067	33,067	33,067	131,352
		9~25층	17	67,805	384,083	451,888	10,000	35,000	33,892	33,892	33,892	33,892	33,892	33,892	33,892	33,892	33,892	135,752
		26~최상	2	67,805	393,083	460,888	10,000	35,000	34,567	34,567	34,567	34,567	34,567	34,567	34,567	34,567	34,567	139,352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저층 우선 배정세대(11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322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인지세법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인지세 납부 대상이므로 공급계약 체결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수입인지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으며, 부동산거래 및 분양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거래가(분양대금+프리미엄)를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금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 가능하며, 우체국, 취급 금융기관에서 구매 가능함.
 - 분양(전매)계약서에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으면 납부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100%, 6개월 이내 200%, 6개월 초과 30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 또는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문의하시기 바람.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으로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별도의 발코니 확장 계약을 진행함.
- 상기 공급금액은 플러스옵션 품목(시스템 에어컨 등) 비용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플러스옵션 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및 기타 제세공과금, 인지세가 미 포함된 금액임. (후추 취득세 산정 시 플러스옵션 품목(유상옵션)이 합산되어 산정될 수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登記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의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차장, 기계/전기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일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및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면적과 차이(면적증감)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동·호수에 가산(감산)할 수 있으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면적 및 분양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출에 따른 주택신용보증수수료 및 인지대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에 관한 추가비용은 대출신청자가 부담하여야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 및 본인의 부적격 사유, 정부정책에 따른 대출제한 등으로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없음.(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되,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 및 다른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나 할인이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분양주체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불가)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함.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여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홍보 제작물 및 입주자모집공고의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주영더밸리스지븐' 견본주택(055-649-7575)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m²,세대)

구 분		59A	59B	59C	73A	73B	84	합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1	1	2	3	1	-	8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1	1	4	-	1	7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3	1	1	8
	장애인	2	-	2	4	1	-	9
다자녀특별공급		4	3	6	14	3	2	32
신혼부부특별공급		7	7	12	27	7	4	64
노부모부양특별공급		1	1	2	4	1	1	10

생애최초특별공급	4	3	6	14	3	2	32
합 계	20	17	32	73	17	11	170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신혼부부)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생애최초)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구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민간 사전청약을 포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3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 경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 장애인 : 경상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해당지역(통영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3명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2명	10	
		자녀 중 영유아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경상남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10년 미만	10	
		1년 이상~5년 미만	5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6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 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 이어야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 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 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 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통영시) 거주자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통영시) 거주자한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초과/자산기준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 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 첨 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 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 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 서류로 준용
3.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4.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할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 계약 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 평균소득을 산정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 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 평균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0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통영시) 거주자 우선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3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영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2022년 적용)**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 2022.02.2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 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 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통영시)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됨.
-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결과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 접수가 가능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현장 접수 시 공급별 구비서류 미 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음.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자, 장애인 및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중 최하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당첨자에게 최하층을 우선 배정함. 단,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시 만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에게 우선 배정함.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3) 현재 통영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청약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관련[별표2]

구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통영시, 경상남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85㎡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102㎡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135㎡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제한사항 조회 요망.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 간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②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 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단, 노부모 특별공급은 제외)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 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p>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 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부양 가족 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함.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중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IV 신청일정 및 장소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 06. 15(수)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주영더팰리스지분" 건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주영더팰리스지분" 건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2. 06. 16(목)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2. 06. 17(금) 09:00~17:30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건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p>
<p>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p> <p>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p>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 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일반공급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서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V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등·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2. 06. 23(목) ▪ 확인방법

일반공급	1순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건분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쏠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06.23(목) ~ 2022.07.02(토)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06.23(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정방법
특별공급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1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 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추첨제 적용 •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통영시 거주신청자가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천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태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천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천으로 선정 • 미 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 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천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천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 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등)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체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로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청약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신청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검수하여야 하며, 검수하지 않은 대상자는 추천참여 기회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 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 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VI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 일정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로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확인)
- ※ 사전검수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적격검수,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시	2022.06.24(금) ~ 2022.06.30(목) 7일간 10:00 ~ 16:00	2022.07.04(월) ~ 2022.07.06(수) 3일간 10:00 ~ 16:00
장소	“주영더팰리스지븐” 견본주택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9-2번지)	
대상자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당첨자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3.) 이후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이 필요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외 계약 진행 불가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상세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청약자, 세대원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적격검수 제출 일정 기간 내 감염증 예방관리 수칙의 정부 시책에 따라 방문예약제로 운영하오니 견본주택(055-649-7575)로 사전방문예약 신청접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자격확인서류를 제출기한까지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특별공급 신청자 중 장애인 및 65세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 가능)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발표일 이후 자격서류제출 기간 내 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자격검증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무주택서약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청약('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 인터넷 청약('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
○		신분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시, 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이 안 될 경우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거주기간 확인.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해외 체류(90일 초과)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출생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3)로 지정하여 발급
	○	단신부임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만 해외에 체류(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	복무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3)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등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은 만30세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p>[청약자 단신부임 제외사항]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해외체류기간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3)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p>[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3)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p>[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3)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3)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출생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3)로 지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 해당기관 추천서 (기관 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한부모가족증명서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또는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본에 등재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신청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인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 임신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이외 불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임신진단서, 출산이행확인각서는 견본주택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배우자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3)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자녀 관계가 확인 되는 않는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기본증명서	자녀	•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3)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자녀가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 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 중인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해당자	• 비사업자의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분리세대 배우자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 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사업주체 건본주택 비치, 혼인 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 신고일 확인(상세내역 발급)
		○		자녀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본인 및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발급처: 해당직장 및 세무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발급처: 세무서)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있는 자 포 함) ※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소득증빙서류	세대구성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03)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 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본인 및 해당자	• 비사업자인 경우 (건본주택에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소유현황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제3자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건본주택에 비치

대리인 신청시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생략
	○		신분증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서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일반공급(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0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용(본인발급)
	0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본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주소변동 사항·사유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0		직계존속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직계비속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0		직계존속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점수를 산정한 경우
	0		직계비속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배우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손자녀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0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 주민등록법 」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0	직계존속			
0	직계비속			
	0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6개월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해외 근로자 (단신부임)	0	해외체류증빙서류	본인	<p>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p> <p>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해당 사항 반드시 제출)</p> <p>: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p> <p>※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p>
	0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0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0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부적격 당청 통보를 받은 자	0	무주택소명서류	해당 주택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0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청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0	인감증명서	청약자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0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0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0	신분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점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서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직장 -세무서
	금년 신규취업자/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해당직장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 (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해당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접수장소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 자영업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무서 -해당직장 -건강보험공단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①근로자 및 자영업자 ②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연금관리공단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합니다.

Ⅶ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문의전화
당첨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2022.07.04(월) ~ 2022.07.06(수) 3일간 10:00 ~ 16:00	"주영더팰리스지분" 견본주택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9-2번지)	055-649-7575~6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 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 아래 **계약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구비사항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기본 서류 [본인 계약 시]		0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0	적격여부확인증빙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0	계약금(무통장입금증)	- 분양계좌로 납부한 내역이 명기된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 포함)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계약 불가
		0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인지세 납부 후
추가 서류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계약자)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발급))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0		위임장(계약자)	
	0		신분증 및 인장(대리인)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서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아파트 계약용으로 사용 불가합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함.
 -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③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청약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1)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함.
 - 2)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3)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4)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서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 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해야하고,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함.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해당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주택이므로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본 아파트에 일반공급으로 중복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 (2009.04.01 해당제한 완화조치에 따름)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추후 분양권 전매 요청 시 당해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사업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같은 법 제26조,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 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함.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58조 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당첨일부터 '수도권은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주택의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동일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한국부동산원의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업은행	175-050588-04-128	(유)주영산업개발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1001호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체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 잔금은 공급계약서상에 기재된 분양대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상기 분양대금 계좌는 향후 중도금대출은행 선정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추후 은행명 및 계좌번호가 변경 될 수 있음.
- 타인 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사업주체에 소명하여 계약금으로 처리된 경우라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한 것인지에 대한 소명을 요청할 수 있음. 소명 불가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2회차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받는 것에 동의하며(개별 금융기관 지정 불가함), 정부의 부동산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및 금융기관의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 및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지연이자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미납대금, 지연이자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함.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이자는 사업주체 및 중도금 대출기관과 체결되는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하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대출 이자는 사업주체에서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단, 사업주체가 지정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 제한으로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 이자는 해당하지 않음)
-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중도금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계약자가 직접 납부한 중도금 금액에 대하여 이자 및 할인은 발생하지 않음.
- 사업주체와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계약자에게 중도금대출 상환 약정기일이 도래하면 잔금 납부와 무관하게 중도금 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던 중도금 대출이자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시 정부의 부동산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동산 담보비율이 감소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함.
- 외국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은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보증 및 금융기관에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아파트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름.

VIII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품목(유상) 계약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2. 12. 23.	입주지정일	
59A, 59B, 59C	13,230,000	1,320,000	1,320,000	10,590,000	
73A, 73B	15,940,000	1,590,000	1,590,000	12,760,000	
84	17,550,000	1,750,000	1,750,000	14,050,000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 계좌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업은행	175-050588-04-135	(유)주영산업개발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1001호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바랍니다.

※ 지정된 납부일(중도금, 잔금)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미납 시 지연이자가 가산됨)

■ 발코니 확장 시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건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 및 확장 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및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함.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사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창호의 개폐 방향 및 분할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사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시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주택법령,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행정관청에 행위허가 신고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 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세대는 필요 시 발코니에 선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비 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 확장형 선택 시 발코니 샷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 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될 수 있음.
- 발코니 비 확장형 세대의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 확장형 세대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가 비 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비 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 상의 문제로 플러스옵션 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플러스옵션 품목(유상옵션)

- ※ 플러스옵션 품목의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하며, 판매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합니다.
- ※ 플러스옵션 품목의 납부 방법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분할 납부하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1)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 위치	설치대수	제조사	금 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 고
						계약 시	2022. 12. 23.	입주지정일	
59A, 59B, 59C	고급형 (공기청정 기능 추가)	거실, 안방	2대	LG전자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4대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거실, 안방	2대	삼성전자	4,250,000	425,000	425,000	3,400,000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4대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73A, 73B, 84	고급형 (공기청정 기능 추가)	거실, 안방	2대	LG전자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4대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거실, 안방	2대	삼성전자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거실, 안방, 침실2, 침실3	4대		7,550,000	755,000	755,000	6,040,000	

■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선택이 가능한 유상옵션임.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 디퓨져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함.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음.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매립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매립배관 설치개소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시스템에어컨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및 안방에 매립배관만 시공됨.

2) 오브제 냉동·냉장·김치냉장고 (외부 도어판넬 글라스 타입)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모델명	제조사	금 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 고
					계약 시	2022. 12. 23.	입주지정일	
59A, 59B, 59C	오브제 4도어 냉장고 / 3도어 김치냉장고	BC4S1AA1(G) BC3K1AA1(G)	LG전자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비스코프 4도어 냉장고 / 3도어 김치냉장고	RF60B91C301 RQ33A74C201	삼성전자	5,930,000	593,000	593,000	4,744,000	
73A, 73B, 84	오브제 1도어 냉동·냉장고 / 3도어 김치냉장고	BC1L1AA1(G) BC1F1AA1(G) BC1K1AA1(G)	LG전자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비스코프 1도어 냉동·냉장고 / 3도어 김치냉장고	RZ32A7655AP RR39A7685AP RQ32A7612AP	삼성전자	4,590,000	459,000	459,000	3,672,000	

3) 식기세척기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모델명	제조사	금 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 고
					계약 시	2022. 12. 23.	입주지정일	
73A, 73B, 84	12인용	DUB22SB2	LG전자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12인용	DW60A8375LBUS	삼성전자	1,290,000	129,000	129,000	1,032,000	

■ 플러스옵션 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플러스옵션 금액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냉동·냉장·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기업은행	175-050588-04-142	(유)주영산업개발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101동 1001호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플러스옵션 품목은 타입별 계약금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람.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임)

※ 지정된 납부일(중도금, 잔금)에 입금하시기 바람,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미납 시 지연이자 가산됨)

■ 플러스옵션 품목 유의사항

- 플러스옵션 품목은 발코니 확장 세대에 한해 선택이 가능함.
- 플러스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플러스옵션 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플러스옵션 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플러스옵션 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플러스옵션 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임)
- 플러스옵션 품목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고 외 플러스옵션 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자재발주 등 시공 상의 문제로 플러스옵션 중도금 납부일(2022.10.25) 이후에는 플러스옵션 품목의 계약 및 계약 해제 불가는 물론 판매가 할인 또는 사양(모델)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플러스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나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기 옵션 계약도 해제 또는 취소됨.
- 상기 플러스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IX 유의사항

※ 청약신청 및 공급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람,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사항(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계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 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 타사 또는 당사의 다른 분양아파트의 외부특화디자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및 기타 시설물 등의 내용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설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람,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음.
-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는 주택형 59B, 59C, 73A 형이 건립되어 있으며, 그 밖의 미건립(59A, 73B, 84) 평형 및 타입은 모형 또는 카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람, 계약 전에 평면형태, 가구 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분양카탈로그 이미지 등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구, 내부 마감재, 가전제품, 인테리어소품이나 식재, 시설물,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시공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거나, 그 형태 또는 색상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사업승인(변경)도서(견본주택에 비치되어 계약자 요청 시 열람가능) 기준으로 하고, 추후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함.
- 분양카탈로그 이미지 등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축적 및 건물높이, 동간거리 등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시행인가도서에 따르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분양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발체·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기 바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제작 제공한 홍보물 이외의 홍보자료와 주변의 구두 과대선전 등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은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하며, 철거 전 비디오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전화상담 및 견본주택 방문고객 상담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광고상 표시된 분양가격의 의미는 최저층 혹은 전체세대의 평균분양가의 의미이며, 계약하신 세대의 분양가가 아님을 양지바람.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서 주택별 공급금액이 상이하므로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발코니 확장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계약 체결 시 유의 바람.
- 당첨 및 계약 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람. 사업주체에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당첨자 및 계약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유의하기 바람.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입주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분양자(사업주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함.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광도면 죽림소재 제석초등학교 및 죽림초등학교 중 입주 전 경상남도통영교육지청과 협의하여 결정될 예정임.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행정명령, 노사분규(연관업체 포함)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이 발굴될 시 발굴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바람.
- 일부세대의 경우에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샘플하우스로 이용 및 관람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사업주체에서 임의로 선정하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 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위 목적물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준공하고 목적물을 인도함.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장기간 소요될 수 있음.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 이행하여야 함).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함. (단, 소유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금을 부과하며,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만들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운영을 하여야함.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 하여야함.
- 본 공동주택(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약 개별 인테리어 공사를 할 경우는 중도금대출 및 분양 잔금(옵션 포함)을 완납 후 가능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 계약자 또는 그 사용자가 무단 구조변경 등 본 계약서 내용 및 기타 입주 시 고지된 입주자 유의사항을 위반 또는 해태함으로써 인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 및 하자보수책임 및 제조물책임법상의 책임을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아파트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이 적용됨.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됨.
-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외국인(재외동포 및 외국인 거주자)은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보증 및 금융기관에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체, 계약자의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름.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위 주택 소재지 또는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함.

X 단지 여건사항

※ 단지 내·외부의 사항을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여건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모형도, 도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부지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 등 건축물로 프라이버시 침해, 기타 생활환경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 시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음으로 확인바람.
- 사업부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인도 폭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음으로 확인바람.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후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한 공사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아파트 부출입구로 사용하는 통행로는 한국수자원공사 부지로, 부지사용에 따른 점용비용이 발생하며 그 비용은 입주민이 지급해야 하고, 사업주체에 점용비용 등 납부를 요구할 수 없음.
- 아파트 주 출입구 전면 14호선 국도에 설치된 횡단보도는 도시계획사업시설 계획 변경 등에 따라 위치가 이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인근에 통영대전고속도로지선이 접하여 환경피해(소음 등)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 및 확인하여 청약신청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추후 사업주체, 통영시 및 도로관리 기관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본 아파트 인근 고속도로는 장래에 확장공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확장공사로 인한 차량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소음 등)을 사유로 사업주체, 통영시 및 도로관리 기관 등에 소음피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여건

- 사업시행인가 도면과 실시계획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변경 인·허가를 진행함.)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면적증감은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 간, 세대 간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의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시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구조 및 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지상1층 주차장 차량 진출입부 유효높이는 4.0m이며, 지상2층, 3층 주차장의 차량 통행로 유효높이는 2.3m 이상으로 되어있으며, 주차면은 설비 및 소방배관의 영향으로 차량 통행로보다 유효높이가 낮아질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층고가 상이할 수 있음.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계단 및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등),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주차장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문주, 천장,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계약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주동 필로티 출입구 상부 캐노피 설치부위는 사업주체 특화 계획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모형에 표현된 웅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발생 또는 마감수준 현저한 저하가 아닌 경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음.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를 위한 안전매트 설치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그 위치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차량 출입구 차단기 위치 및 진·출입 선형의 옥외 조경 구간은 본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부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작품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과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개수 및 규모는 사업승인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본 시공 시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공용시설이 추가 또는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용면적의 증감으로 인해 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은 변경 정산하지 않음.
-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대지면적 확정에 대하여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설계도면 및 모형 등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본 단지는 대지 특성상 단지 내 고저차가 존재하며, 일부 저층부 세대는 조망, 일조 등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기 바람.
- 아파트 옥상 및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 등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음.
- TV공청 안테나는 수신방해가 없는 임의의 동 옥상에 설치 예정이며 추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위치 변경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단지주변 도시계획도로 및 주차장 출입구 포함)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며, 공유시설물에 인접한 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 침해, 시각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옥상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태풍 등 강풍 발생 시 옥상 환기시설(무동력환풍기 등)의 가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 상 주민공동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등) 지상에 설치하는 에어컨 실외기 등으로 소음 및 진동, 세대간의 간섭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에어컨 실외기 등의 설치위치는 변동될 수 있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필로티 공간으로 인한 인접 세대는 외부의 통행에 따른 소음이나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의 필로티 내외부와 저층부 주변에 제연환류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이며, 소방활동 및 점검 시 작동되는 팬으로 인하여 소음, 환기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상에 지하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기계/전기실 D/A, 주차장 D/A 지하 채광창, 부대시설 실외기 시설 등이 돌출되어 세대에 간섭이 될 수 있음.
- 전기실 , 발전기실, 펌프실, 지하저수조실은 102동 지하 1층에 설치되며, MDF 및 감시제어반실(방재실)은 102동 관리사무소 옆에 설치됨.
- 102동 동측에 발전기실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가 위치하여 발전기 가동으로 인한 그늘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매연이 인근동으로 유입될 수 있음. (정전 시 또는 점검 시에만 발생)
- 단지 배치 상 자전거 보관소, D/A(기계·전기실 등의 급·배기구)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규모,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102동 인접하게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출입동선에 따라 위치나 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함과 인접한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조망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삿짐운반 등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원칙이므로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주차장과 아파트 층 엘리베이터 홀과의 연결통로 및 길이,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의 경우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지하층 접근로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동 및 세대에서는 이용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도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오수처리는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통영시 차집관로로 직접 연결 시공될 수 있고 이 경우 정화조가 필요 없어 도면에 있는 정화조는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등으로 삭제 미시공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비용 정산 등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지하1층은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 저수조 등이 있는 설비층으로서 주차공간이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아파트의 난방 및 취사용 가스는 도시가스가 공급될 예정임.
- 외벽디자인 및 색채와 단지 내 조경시설물, 바닥패턴과 단지외부 도로차선은 시공과정 중 계약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7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의 디자인, 캐노피, 지붕형태, 단지 주출입구 등은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3호 가목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기숙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될 수 있음.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자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자 등을 요구할 수 없음.

XI 설계 관련 주의사항

※ 다음과 같은 각 세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은 국가 공인 표준 시험동에서 시험한 완충재의 시험 성적서에 따른 등급이므로, 추후 실제 세대의 성능과 다를 수 있음.
- 세대 전용부 및 공용부 타일 시공 시 타일 뒤편을 떠붙임 시공 기준 70%를 충족하여 시공하면 뒤편재 부족을 이유로 하자로 주장할 수 없음.
- 액체방수 시공 시 액체방수 두께는 준공도면에 달리 기재하지 않는 한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KCS 41 40 08 : 2016에 따라 액체방수 두께 기준은 삭제되고 방수성능(누수여부)에 따라 하자여부를 판정하여야 함.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계단 및 복도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분양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확인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가 협소하여 창 위치에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소방법에 의한 제연설비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일부 고정창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실내 점검 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의 발코니, 가구 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 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내 설치된 각종 전자제품의 A/S는 사용자 인적사항이 필요함에 따라 제조사 A/S사무실로 직접 고장 접수 및 수리를 요청해야 하며, 고장의 원인에 따라 유상수리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제조사의 보증기간에 따라 보증기간이 종료되면 일체 유상수리로 전환됨.
- 본 시공 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 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칸막이벽은 경량벽체로 시공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낙하 및 파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해야 함.
- 본 시공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액세서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높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천장에 설치된 점검 구는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크기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시공 시 욕실 천장 설치를 위해 천장몰딩이 설치될 수 있음.
- 욕실 세면기 상부 인조대리석 또는 석재선반은 2개의 제품을 접합하여 제작한 제품으로 접합부에 이음줄눈이 노출될 수 있으며, 접합부 이음줄눈 노출을 원인으로 하자보수 요청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 설치된 거울은 세제 등 생활용품(알칼리성 화학성분)의 사용상 부주의 및 관리소홀로 인하여 변색 될 수 있음.
- 세대 평면 구조에 따라 실외기실이나 후면발코니, 팬트리 내에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됨.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세대 내에 보일러가 설치됨.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및 분할은 구조검토결과 및 안전상의 문제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 박스 높이는 천장 설비에 따라 실별로 상이 할 수 있음.

- 동일 평면 타입이라도 해당 층, 호(측세대 여부 등)에 따라 외부창호, 단열재 시공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형별성능 내역에 제시한 창호 및 단열재는 법적 기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함.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세대 디딤석 및 주방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 이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과 무관함.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위치에 설치되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다음 각목의 세대 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고 콘크리트 노출로 시공됨.
 - 가.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락패널이 시공되지 않음.
 - 나.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다. 주방가구와 접하는 후면 및 측면에는 타일, 세라믹 또는 엔지니어드 스톤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라.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고 바닥 미장 마감면이 노출 시공될 수 있음.
 - 마. 신발장 및 불박이장 상·하부 및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도배지, 천장지, 마루 등)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 및 미 시공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에 수납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부분 수정될 수 있고, 온수분배기 설치 위치의 가구 뒷판과 하부 바닥 마감은 시공되지 않고 콘크리트 노출로 마감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난방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으며,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및 가구 설치로 가려지는 부분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 싱크대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음. 주방가구의 상부장이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와 겹치는 일부 타입의 경우 상부장의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으며, 발코니 비 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보조주방(세탁실)은 별도의 천장 마감이 없으며,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주방TV는 싱크대 상부장 하단에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됨.
- 발코니, 욕실 등 단차부위는 실시공시 바닥 구배 등으로 인해 위치별로 단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은 하자과 무관함. (건본주택과 단 높이 차이가 상이할 수 있음.)
- 실시공시 세대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침실, 욕실 등의 문짝 고정부 모서리 1면에 손끼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으며, 모든 도어 하부는 오토실이 설치되지 않음.
- 주방 및 욕실의 환기장치를 통해 인접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공간(대피공간, 실외기실,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세대 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의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통합단자함, 전기분전반 및 각종 배선기구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실사용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세탁실과 실외기실 공간을 최소면적으로 계획함에 따라 출입문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사시는 이중창호 등으로 설치되며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선택에 의해 발코니 확장 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이 가능한 발코니에는 비 확장 시에도 별도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희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 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발코니에 설치되는 바닥 드레인 및 선희통의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별도의 드레인이 없으며,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상이하고 실외기의 냉매배관 연결부위 온도차에 의한 결로수 발생은 하자가 아니며, 실외기 가동 효율성을 위해 에어컨 사용 시 실외기실 갠리리창을 개방 후 사용하시기 바람
-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 전동빨래건조대는 등기구가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발코니 등과 스위치(배관배선 포함)는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사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결로 방지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 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발코니, 실외기실 등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실시공사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에어컨 매립배관이 거실 및 안방에 설치되는 현장으로, 옵션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매립배관 설치개소가 달라질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복도장,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는 측세대, 중간세대에 위치에 따라 벽체 공유 면적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의 안목치수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기본형 세대 선택 시 가구배치 및 마감, 창호 등이 확장 세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마감자재리스트에 제조업체가 지정된 제품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고객의 개별 선택에 따라 가변형 벽체가 설치 또는 미설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변형 벽체 설치 또는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차이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음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지하층 및 지상1층 등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홀 부분의 마감재가 특화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복도, 엘리베이터 홀 폭이 기준층보다 좁아질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지 않는 주택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 각종 가구 및 설비 등은 견본주택에 유니트가 건립되는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영더펠리스지분과 LG전자의 IOT서비스(LG ThinQ Home)는 3년간 무상으로 제공되고, 3년 후 서비스신청 입주민에 한하여 월과금 예정임.
- IOT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세대 내 무선인터넷(Wi-Fi AP)가 설치되어야 하고(통신사 무관), 아파트단지 네트워크망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며, 제어방식에 따라 일부 기기는 별도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서비스 이용조건은 사용자와 LG전자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음)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LG전자 제공)에서 세대 내 설치된 조명, 난방, 가스밸브 제어가 가능하며, IOT 호환이 되는 가전기기까지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음. (스마트 가전제품은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해야 하며, 반드시 LG전자 IOT와 호환되는 모델이어야 함.)
- IOT서비스 관련하여 추후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LG전자의 사업정책에 따라 30일 전 예고 후 종료될 수 있으며, 세부 이용조건은 LG전자의 계약 내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견본주택과 영상의 IOT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IOT서비스는 입주자와 LG전자와의 계약관계이며 사업주체는 기본 인프라만 제공하는 것으로, IOT서비스에 대한 내용 및 기술지원은 IOT서비스 제공업체(LG전자)에 확인바람.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화재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견본주택 자체의 소방 대책으로 설치된 것으로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사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본 시공 시 발코니 확장 및 확장 시 포함품목은 별도 계약 사항임)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니 기본 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시된 에어컨매립 매립배관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내 설치된 에어컨은 냉·난방 사용을 위해 냉·난방 겸용 제품이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에어컨 유상옵션 선택(냉방용)에 따라 사양 및 크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옵션 계약 시 제품 모델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표시된 욕실 및 발코니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일부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었으며, 타입별 제공품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및 견본주택에 적용된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급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사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견본주택에 건립된 세대는 미러타입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해당 세대를 확인하시어 관람하여 주시기 바람.
-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견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세대 내부에 한함.

XII 기타 참고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규제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행정명령, 노사분규(연관업체 포함) 등 사업관계자의 귀책을 볼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등**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2412022-101-0000100호	일금팔백이십이억오천삼백육십육만사천원정 ₩82,253,664,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분양보증 약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p>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p> <p>【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p> <p>【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p>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p>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p>【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총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p>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p> <p>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p> <p>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p> <p>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p> <p>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p> <p>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p> <p>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p> <p>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p> <p>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p> <p>【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p>
<p>제4조 (보증사고)</p>	<p>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p> <p>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p> <p>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p> <p>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p> <p>【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p> <p>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p> <p>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p> <p>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p>
<p>※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p> <p>※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p> <p>※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p>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994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의 제7조 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합니다.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효율기자재	적용	전동기/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1개소에 설치(세대)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설치(세대)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단위세대 일부, 공용부 일부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공용부)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구조감리
회 사 명	(주)진명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주)씨지스플랜
감리금액	912,132,870원	383,560,000원	33,0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상 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유)주영산업개발	경남 통영시 무전6길 14-12, 201호	191214-0000453

■ 견본주택 :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 1569-2번지 “주영 더 팰리스 지븐” 견본주택

■ 분양문의 : ☎ 055-649-7575, 649-7576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